

2017년도 제1차 순경채용 필기시험 기출문제 해설(경찰학개론)

해설 : 송 광 호

◆ 문제 분석표 ◆(참고 : 상 중 하는 난이도, 조는 조문문제, 판은 판례)

구분	문제수	목차	세부문제수	박스형개수문제	특징
총론	10	경찰학서론			1. 총론 : 각론 = 10 : 10
		경찰철학론	1번_경찰의 부정부패 원인_중 2번_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_중_조		2. 전체적인 난이도 : 중상급
		한국경찰사			3. 박스형 개수문제는 없고, 2017년 경찰승진시험처럼
		비교경찰론			① 각 설문에 대한 ○, × 판 단 문제, ② 옳은 설문 고르기, ③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합 하기 등의 유형으로 출제되 었음.
		경찰행정법	3번_경찰위원회_중_조 4번_시보임용_중_조 7번_계급정년_중_조 5번_질서위반행위규제법_중_조 6번_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기준_중_조		4. 출제되지 않은 영역 ① 경찰학 서론 ② 한국경찰사 ③ 비교경찰론(세계경찰사) ④ 기타활동 (20번의 출입국관리법 문제는 경찰외사론과 경찰수사 각론의 문제가 겹침)
		경찰관리론, 통계론	8번_계급제와 직위분류제_중 9번_정보공개법_상_조 10번_경찰감찰규칙_중_조		5. 특성 ① ㉠ 경찰실무문제집과 ㉡ 2016년 10월 경간부와 순 경시험, ㉢ 2017년 1월의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하였다면 아 주 고득점이 가능했음. ② 특히 실무문제집에서 최근 개정되어 들어간 문제가 약 간 변형되어 출제됨. ③ 난이도 조절용 문제 : 1문제 ④ 이미 출제되어 온 기출문제 에 해당하는 조문을 보다 꼼꼼하게 공부해야만 고득 점함. 기출문제만 단순 반 복한다고 고득점이 보장되 지 않음. ⑤ 두문자 암기법이나 단답형 암기법은 기본문제를 맞을 수 있는 정도에 그침.
각론	10	생활안전론	11번_경비업_중_조 12번_실종아동등_중_조		
		경찰경비론	13번_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_중_조 14번_테러방지법_중_조		
		경찰교통론	15번_주차금지장소_중_조 16번_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_중_조		
		경찰정보론	17번_정보의 배포수단_중		
		경찰보안론	18번_간첩망의 형태_중 19번_보안관찰 해당범죄_하_조		
		경찰외사론	20번_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_중_조		
		경찰수사론			
		기타			

※ 본 해설의 무단 복제, 무단 배포, 무단 게재를 금지합니다.

※ DAUM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에 판례, 조문, 단문형 매일테스트, 유료 모의고사도 많은 이용바랍니다.

※ 경찰승진시험(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1·2·3), 순경채용시험, 경간부시험을 위한 회원제 유료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카페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제 유료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와 그 변형문제, 실무문제집의 변형문제로 만들어집니다.

★ 현재 수험상황의 문제점

시중의 경찰학 교재들이 실무문제집을 상당부분 참고하고 실제로 실무문제집에서 많은 부분이 기출문제로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에게는 쉽게 가르치고 실무문제집이 양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수험생들은 무언가 배웠다는 느낌을 갖고자 한다는 이유로 두문자나 기출설문 체크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험지식을 얻으려는 풍토가 만연하다.

실무의 중요도에 맞게 출간되고 있는 경찰공제회의 실무문제집을 학원강사들은 수험생들에게 강조하지 않고 단순한 두문자나 숫자 그리고 단답형 암기에 가깝게 가르치고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음담패설로 수험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들 또한 두문자나 숫자 그리고 단순 암기만하면 고득점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이론적인 배경지식 없이 조문이나 판례를 달달달 외우면 고득점할거라는 착각 속에 상당부분의 수험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번 기출문제는 실무문제집과 최근 개정된 법령 및 행정규칙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만 관심있게 보았다면 아주 고득점 했을 것이다.

※ 이해 위주, 꼼꼼한 설명, 시각적인 판서의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이론 강의와 교재**

http://gyunggan.dangi.co.kr/teacher/main?teacher_id=655

※ **최신 경찰학(경찰실무) 기출문제 해설(진도별, 250제) 특강과 교재**

http://gyunggan.dangi.co.kr/teacher/main?teacher_id=655

내용 : 2017년 1월 경찰승진기출문제(실무문제집의 출처를 공개함), 2016년 10월 경간부와 순경시험 기출문제 약250문제를 진도별로 편집하여 강의함. 준비하는 시험에 맞게 부분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음.

교재만 구입하는 경우 : 네이버 스토어팜

<http://storefarm.naver.com/changjomunwha/products/669501781>

※ **경찰실무(종합, 1, 2, 3) 유료 모의고사 신청은 010-8677-9429**

내용 : 경찰실무문제집의 문제변형, 기출문제와 그 변형문제로 구성되고, 실무문제집의 출처를 밝혀 복습을 쉽게 함.

※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이론참고서 ver. 3.0.2.(2017년판 2쇄판) [최신간]**

내용 : 2017년 1월 경찰승진시험문제 까지 분석 수록 / 최근 개정된 집시법령 내용 수록(구체적인 과태료 규정)

교재 구매 : <http://storefarm.naver.com/changjomunwha/products/678053883>

<http://cafe.daum.net/no1police>

DAUM 카페 [경찰실무교실-송광호]

공부와 관련한 자유로운 질문, 교재, 강의, 유료 모의고사 등 문의는 010-8677-9429 (송광호)

<http://cafe.daum.net/no1police>

(경찰실무교실-송광호)

1.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 ③ 서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 ④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입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입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정답 ④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난이도 중급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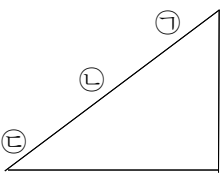
① [틀림]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틀림]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③ [틀림] 서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은 부패가 아니나, 사소한 호의(gratuity)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므로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는 가설이다.

④ [옳음]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구조원인 가설'은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입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입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정리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의의	(1)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호의(gratuity)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므로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는 가설 (2) 관련된 한국 속담 : '바늘도둑이 후에 소도둑 된다.'
주장자	서먼 등
내용	(1) 비록 공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중대한 잘못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자체로는 문제삼을 만한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임(아래그림의 ㉠). (2) 사람들이 일단 일정한 관행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점점 더 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다른 관례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음. (3) 경사로의 정점에 있는 관례(㉢)와 밑에 있는 관례(㉠)가 둘 다 비도덕적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논리적 형태와는 달리, 심리적 형태에서는 경사로의 정점에 있는 관례(㉠, 도덕적)는 아래에 있는 관례(㉢, 비도덕적)와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 구별됨.
도해	 ㉠ : 작은 호의(예 공짜커피) ㉡ : 중간단계의 부패(예 도박) ㉢ : 좀더 큰 부패(예 절도) 서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gratuity, ㉠)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 → ㉠의 공짜 커피와 같은 작은 호의(이 단계에서는 부패가 아님)가 나중에는 ㉡, ㉢과 같은 부패로 연결
비고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함.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함.

정리 경찰부패의 원인

전체사회가설	(1) 주장자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 (2) 내용 : 시민사회의 부패,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 (3) 서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한 이론은 '전체사회가설'임 : 시민의 호의에 길들여져 명백한 부패로 빠져들 수 있음. (4) 윌슨의 결론 : '시카고 시민들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
구조원인가설	(1) 주장자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 (2) 내용 :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 →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함. 예) 신임 홍길동 순경은 경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선 근무하는 중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부패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 영화 "투캅스" (3)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법규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발생함. 예) 많은 사람이 혼자 출장을 가면서도 두 사람의 출장비를 공공연하게 청구하거나 많은 사람이 퇴근 후에 잠깐 들러서 시간외근무를 조작하는 경우 예) 형사과에 근무하는 甲 경사는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어 출장을 가는데 사실은 혼자하면서 동료 2명의 명단을 제출하여 출장비를 수령하는 경우
썩은사과가설	(1) 썩은 사과가 상자안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듦. (2) 부패의 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3) 부패발생의 원인 : '이미 형성된 개인적 성격(결함)'에서 찾는 입장
결론	부정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의 어느 한 가지 가설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남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② [틀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항).

③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항

④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2항

조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6.12.2.] [경찰청훈령 제814호, 2016.12.2., 일부개정]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 이유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① ㉠(X) ㉡(X) ㉢(O) ㉣(X) ㉤(O) ② ㉠(O) ㉡(X) ㉢(X) ㉣(O) ㉤(O)
- ③ ㉠(X) ㉡(O) ㉢(O) ㉣(O) ④ ㉠(O) ㉡(O) ㉢(X) ㉣(X)

정답 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행정조직법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X) ㉡(X) ㉢(O) ㉣(X) ㉤(O)

㉠(X)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제1항).

㉡(X)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3항).

㉢(O) 「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1항

㉣(X)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찰법」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항).

조문 「경찰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정 리 경찰위원회

소 속	행정자치부 소속
근 거	(1) 『경찰법』에 근거하여 설치 (2) 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함. ↔ 경찰위원회 스스로는 규칙제정권을 가지지 못함.
기 능	민주제 토론에 의한 결정으로 독임제 경찰관청의 단독결정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경찰활동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에 기여
성 격	(1) 법문상 성격 : 치안정책에 관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경찰법』 제5조) ↔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므로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지 않음 (2) 사실상의 성격 :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인정, 의결사항의 한정성 등으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 기능에 한계가 있음.
구 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의 위원은 상임, 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경찰법』 제5조 제2항, 제3항).
위원장	(1) 선임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2) 직무대행 :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구 성 위 원	(1) 결격사유 ①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당적을 이탈한 다음날로부터(x))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5년(x))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 판사(x))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임명 : 위원(↔ 위원장(x))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위원 중 2인(↔ 3명(x))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3)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 2년(x))으로, 연임할 수 없음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 (4) 신분보장 ①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②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결요구와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 (5) 당연퇴직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
권 한	(1) 심의·의결권 (2) 경찰청장 임명에 있어서의 동의권
의 결 사 항	(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경찰업무 의의(↔ 경찰임무와 관련하여(x))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위원회 위원장(x)) 및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x))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의 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의 효력	(1) 구속력 : 경찰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자치부장관을 구속함 (2) 재의요구 ① 재의요구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x)) ② 요구사유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재의요구기한 : 10일 이내 (3) 재의결 ① 재의결기간 :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함 ② 재의결 정족수 : 재의결시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결
운 영	(1) 정기회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함. (2) 임시회 : 위원 3인 이상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x))이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경우 →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3항). (3) 위원회 사무는 경찰청(↔ 행정자치부(x))에서 수행함. (4) 간사는 기획담당관(『경찰위원회규정』 제8조 제1항) → 기획조정담당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5) 의견청취등(『경찰위원회규정』 제9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경찰위원회는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로 인권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x) →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훈령)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하에 설치함)

4. 「경찰공무원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

정 답 ④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난이도 중급
해 설

- ④ [틀림]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4항 제1호
- ①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4항 제3호
- ②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1항
- ③ [옳음]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4항 제1호
- ④ [틀림]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제4항 제4호).

조 문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1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0조(시보임용)

-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

무원으로 인용한다.

-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정 리 시보임용

개 념	임용권자가 신규임용된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찰실무의 습득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명하는 것.
대 상	신규채용되는 정경 이하의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취 지	(1) 필기시험의 보완 : 시험으로 알아내지 못한 점을 검토해 보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 (2) 시험의 연장 (3) 신규채용자의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 (4)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 등에 관한 지식 습득 =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위해서 (x))
시보기간	1년(『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처분(↔ 권력처분 (x))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지휘·감독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함(↔ 지도·감독할 수 있다 (x))(『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1항).
면제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함(『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면직대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x))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x))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x))(『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 단, 징계나 면직에 대하여 소청소송은 가능함(경찰실무종합, 경찰공제회, 2015년, 149쪽).
정규임용	(1)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3항). (2)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경찰청 훈령으로 (x)) 정함(『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4항). (3) 임용절차 :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3항) (4) 임용시기 :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날 (x))(『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정규임용심사위원회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함(『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됨(『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3) 위원은 소속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자로 함(『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4) 의결결정수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5)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신분보장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음. →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교육훈련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1)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경찰공무원임용령』 제21조).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행정작용법

난이도 중급

- 해설 ①〔틀림〕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②〔틀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③〔옳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항
 ④〔틀림〕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항).

조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는 ‘기타장비’에 포함된다.
- ③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은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

- ④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정답 ③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행정작업법

난이도 중급

- 해설 ①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제2항
 ②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
 ③ [틀림]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은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제3호).
 ④ [옳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제2호

- 조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목개정 2014.11.19.]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 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경찰공무원법」 상 규정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년 경무관 : ()년 총경 : ()년 경정 : ()년

① 35

② 34

③ 33

④ 32

정답 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행정조직법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35 = 4+6+11+14

계급정년 치안감 :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 (14)년

조문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1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4조(정년)

-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③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은 전사·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산입한다.
- [전문개정 2011.5.30.]

8.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관리론(경찰경무론) > 경찰인사관리

난이도 중급

해설 ② [틀림] 직위분류제의 장점 중의 하나는 횡적으로 직책의 한계와 종적으로의 지휘·감독관계가 분명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다는 것이다. 즉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말한다.

정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개념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수평적으로 분류하는 제도
분류기준	인간중심의 분류	직무중심의 분류
채택국가	(1) 직무가 단순한 농업사회에 발달 (2)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 직무가 다양하게 분화된 산업사회에서 발달 (2)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3) 관료제의 전통이 별로 없는 미국과 그 영향을 받은 캐나다, 필리핀 등
충원방식	폐쇄형 → 계급의 수가 작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함	개방형
인사배치	선축적·용통적	비선축적·비용통적
신분보장	강함 → 폐쇄형 운영에 따른 폭넓은 순환보직을 통해 신분보장	약함 → 직위가 없어지면 직위자체가 폐지됨
장점	(1) 전직·전보가 용이하고 승진의 폭이 넓으므로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큼 (2) 공무원이 조직전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게 되어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고 부처 간 수평적 조정·협조가 용이함. (3) 폐쇄형으로 운영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용이 → 중간계급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1)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체계의 형평을 확보,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 (2)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에 기여 (3)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 (4) 횡적으로 직책의 한계와 종적으로의 지휘·감독관계가 분명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4)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으므로 인력활용의 신축성·융통성이 높음	(5) 민주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6) 합리적 업무분담과 정원조정에 기여 (7)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 : 직위들을 종직·횡직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 바로 종직 직무분석과 횡직 직무평가임.
단 점	(1) 직무급 체계 확립 곤란, 보수체계의 비합리성 (2) 전문행정가 양성 곤란 (3) 관료의 특권계급화·특권집단화와 공직의 경직화 (4) 권한·책임한계의 불명확성	(1)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 곤란 (2) 인사배치의 비효율성·비신축성 (3) 신분보장의 미흡 (4) 전문화에 따른 수평적 횡직 협조·조정 곤란 (5) 동태적 환경에의 적응 곤란
양자의 관계	(1)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결점을 치유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2) 계급제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직위분류제를 일부 받아들이고, 직위분류제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는 계급제적 특성을 일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출제영역
난이도
해설

- ④
-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통제론
- 상급
- ①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②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제1항 제1문
- ③ [옳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제2항).
- ④ [틀림]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제3항).

-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29.]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8.6.]
-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

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8조(이의신청)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9조(행정심판)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8.6.]

10.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통제론

난이도 중급

해설

- ① **[틀림]**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경찰 감찰 규칙』 제18조(심야조사의 금지)).

- ② **[옳음]** 『경찰 감찰 규칙』 제8조(감찰활동의 관할)

- ③ **[틀림]**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경찰 감찰 규칙』 제16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제2항).

- ④ **[틀림]**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19조(감찰조사 전 고지)).

조 문 『경찰 감찰 규칙』 [시행 2010.1.1.] [경찰청훈령 제582호, 2009.12.31., 전부개정]

제8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제16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와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심야조사의 금지)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감찰조사 전 고지)

-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때에는 여성 경찰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1.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다.
-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① 없음
- ② ㉠㉡
- ③ ㉠㉢
- ④ ㉠㉢㉣

정 답 ②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 > 경찰실무 II > 생활안전경찰론 > 민간경비업

난이도 중급

해 설 ② “㉠, ㉡” 2개는 옳고, “㉢, ㉣” 2개는 틀림.

㉠ [옳음] 『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

㉡ [옳음] 『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다목

㉢ [틀림]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마목).

㉣ [틀림]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라목).

조 문 『경비업법』 [시행 2016.1.26.] [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

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은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정답 ④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 > 경찰실무 II > 생활안전경찰론

난이도 중급

해설 ① [틀림] "아동등"이란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② [틀림]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7호).

③ [틀림]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8호).

④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5호

조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정 리 집회참가자의 해산 및 검거

4단계 해산절차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의 4단계 해산절차를 준수할 것	
	종결선언요청	(1) 관할경찰서장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음. (2)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음.
	자진해산요청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 → 직접 참가자에게 공개적으로 요청 (↔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산명령	(1) 해산명령은 참가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3회 이상 발령할 것. (2) 명령권자 : 경찰서장 또는 수임 경찰관(↔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해산명령을 하기 전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제20조 제1항) 해산대상 집회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것. (4) 경고방송이라는 명칭하에 자진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현장조치 및 기록을 정리할 것. (가) 자진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공통점 : 경찰관이 직접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경고하는 것으로 방송차·메가폰 등을 이용하고, 최대한 많은 참가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는 것. (나) 자진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차이점 ① 자진해산 요청 : 범상 횡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1회로도 족함. ② 해산명령 : 반드시 3회 이상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함. (5) 사후 사법조치 대비 : 해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더라도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① 수임경찰관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 ② 종결선언 및 자진해산 요청, ③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발한 사실에 대해 경찰관 진술서, ④ 정보상황속보, 경비속보, 경비상황일지, 무전녹취록 등을 소명자료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조치할 것.(↔ 해산절차 이행에 대한 기록을 남겨 사후 사법처리에 대비한다(○)) (6)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자진해산 요청 후 약 40분 후에 해산명령을 1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발령하고 검거명령을 내린 경찰의 조치는 정당함(대판2000도2172).
진입작전시 고려사항	(1) 각 부대별 명확한 임무 부여할 것 (2)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진입실시할 것 (3) 진입과 철수순서를 명확히 지시할 것 (4) 시설주로부터 반드시 공권력의 투입요청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음	

1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③ '테러위협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협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 > 경찰경비론 > 대테러

난이도 중급

해설 ① [틀림]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제1항, 제2항).

② [옳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제2호

③ [틀림]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제3호).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제4호).

④ [틀림]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1문).

조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6.4.] [법률 제14071호, 2016.3.3.,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질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협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협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협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정답 ④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 > 경찰실무 I > 경찰교통론

난이도 중급

- 해설
- 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2호
 - 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호 가목

면허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면허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연습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조 문 자동차의 형식·구조 또는 장치변경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종류"의 표의 적용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함.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함.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함.
구조 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함.

장치가 변경된
경우

예 승차정원 45인승 대형버스를 승차정원 12인승으로 개조한 경우 운전면허 ⇒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45인승)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

조 문 위험물운반차량 및 견인자동차의 운전

위험물 운반차량	(1)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음. (2)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 화물자동차 :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음.
견인 자동차	(1) 원칙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음. (2) 예외 ①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함. ②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음.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 ①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②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③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④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정답 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 > 경찰실무III > 경찰정보론 > 정보의 순환과정

난이도 중급

해설 ① [옳음]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정리 정보의 배포수단

비공식적 방법	(1)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짐. (2)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 사이, 분석관 사이에 사용됨. (3)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임.
브리핑	(1) 정보사용자 <u>개인</u> 또는 다수 인원에게 대하여 정보분석관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 (2) 시간을 절약한다는 장점이 있음. (3) 통상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함. (4)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함. (5) 치밀한 사전준비와 구술능력을 요구하며 시간적인 보조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메모	(1) 긴급한 경우에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을 전달하는 방법 (2)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3)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됨(↔ 전파(전신) (x)). (4) 분석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결론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타 수단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브리핑에 비하여 필기(筆記)하므로 증거를 남길 수 있고 발신자나 수신자의 서류철에 보관되는 이점이 있음.
일일 정보 보고서	(1) 매일 24시간에 걸친 제반 정세(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 (2) 대부분이 현용정보이므로 신속한 전달이 필수적임. (3) 사전에 주의 깊게 고안된 양식에 의해 정기적으로 작성되며 복사되고 제한된 인원(범위)에 배포됨.

정기간행물	(1)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인쇄·출판되고, 주간이나 월간으로 배포하며 방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2) 공인된 사용자가 가장 최근의 중요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전달방법
특별보고서	(1) 축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사용함. (2) 정보의 성질·긴급성 및 보고서 접수자의 필요성에 따라 장문 또는 세분되거나 개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3) 생산이 부정기적이라는 면에서 일일 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가 많음. (4)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낮고 정보내용, 긴급성, 정보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함.
지정된 연구 과제보고서	(1) 특정한 정보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 (2) 연구주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진행상황 및 향후 정책대안 까지 제시되어야 함
서 적	정보가 다수인의 참고자료나 교범으로 이용될 때 서적의 형태로 배포됨.
연구참고용 보고서	정보사용자에게는 배포되지 않고 분석관 상호간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고 배포
도표 및 사진	(1)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며 통상 타 수단의 설명을 보충하거나 요약하기 위하여 이용 (2) 시각적으로 증명하거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필 립	(1) 슬라이드 필름을 만들거나 녹화를 하여 배포하는 방법임. (2) 시각적인 효과가 높으며 교육 목적으로 흔히 사용됨.
전신	(1)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해 제1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임. (2) 흔히 해외 주재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효과적임. (3) 배포되는 정보가 단편적이며 주로 전시(戰時)에 많이 이용됨.
휴대폰 문자메시지	(1)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거나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하는 방식(→ 최근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2) 때로는 동시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파하는데 이용함.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정 답 ②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학문 > 경찰실무Ⅲ > 경찰보안론 > 간첩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틀림]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③ [틀림]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다는 장점은 있으나,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④ [틀림]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정 리 간첩망의 형태

간첩망	간첩이 대상국에 침투하여 간첩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공작원을 포섭하고 지하당을 조직하는 형태.
삼각형	개 념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직접 지휘하며,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장 점 (1) 주로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2)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행동공작원 포섭을 3명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

① 「형법」 상 내란죄 ②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③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④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

해 설 ① [틀림]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 [옳음]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제2호

③ [옳음]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제3호

④ [옳음]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제3호

조 문 『보안관찰법』 [시행 2016.1.19.] [법률 제13764호, 2016.1.19., 일부개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균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

정 리 보안관찰해당범죄

보안관찰 해당범죄(○)	대상이 아닌 범죄
--------------	-----------

-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1천만원) 또는 추징금(2천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①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②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③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장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④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부터 (6)까지의 출국금지기간 : 6개월 이내
※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에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인 경우에는 역서에 따라 계산함. 이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도 그 기간에 산입함.
※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확정기한으로 표시함.
(7)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함.
→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송광호
경찰실무

<http://cafe.daum.net/nolpolice>

(경찰실무교실-송광호)